

#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따른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 
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며  
나.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많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 
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기 위함.  
다.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 
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임대사업장 분소의 설치 근거 신설(안 제2조)  
나. 임대사업의 위탁 및 위탁시 경비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)  
다. 등록 장애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(안 제11조)  
라.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1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별첨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기     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”로, “운영에 관한”을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두며,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 장소에 분소를 둘 수 있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농기계 임대사업”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”을 “ “농기계 임대사업”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임대농기계”(이하 “농기계”라 한다)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“농기계 임대사용료”(이하 “임대료”라 한다)라 함은”을 “ “농기계 임대사용료”(이하 “임대료”라 한다)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사용자”라 함은”을 “ “사용자”란”으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

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농업기술센터 소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농기계의 임대 기준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임대하며”를 “농기계를 임대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초과 할”을 “초과할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1회에 한하여 연장 할”을 “한 차례만 연장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[별표] 와 같다”를 “별표와 같이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각각 “따라”로, “임대료를 [별표]”를 “별표”로, “징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제1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재해·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부 반환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

제12조제1호가목 중 “불가능 한”을 “불가능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전액 반환 :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의한 주의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”을 “따른 주의나 관리임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의”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회이상”을 “3회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“자로서 3회이상”을 “사람으로서 3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기계임대사업”을 “임대사업”으로, “각호”

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)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은 기술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업관련 기관의 전문가,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, 작목반장,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.

제20조(중전의 제19조)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운영에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위치)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위치)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두며,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 장소에 분소를 둘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br>1. “농기계 임대사업” 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구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.<br>2. “임대농기계” (이하 “농기계”라 한다)라 함은 이 조례 | 제3조(정의) -----<br>----- 뜻은 -----.<br>1. “농기계 임대사업” 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란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<br>2. “임대농기계” (이하 “농기계”라 한다)란 이 조례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따라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“농기계 임대사용료” (이하 “임대료” 라 한다)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               | 3. “농기계 임대사용료” (이하 “임대료” 라 한다)란 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|
| 4. “사용자” 라 함은 구미시로 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“사용자” 란 -----<br>-----<br>-- 사람을 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기능)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조(기능) ----- 각 호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·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|
| 제6조(관리요원)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| 제6조(관리요원) -----<br>-----<br>농업기술센터소장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|
| 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 ① ----<br>----- 사람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임  
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 
다.

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 
다음 각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  
를 출고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8조(임대기준 및 기간) ① 농기  
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  
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  
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  
하며,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  
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 
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 
단위로 계산하되, 사용기간은 3  
일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 
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 
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9조(임대대상농기계와 임대료)

① 임대대상 농기계 및 임대료  
는 구입가격, 농가부담 등을 감  
안하여 [별표]와 같다.

②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 
받은 사용자는 임대료를 [별표]

-----  
-----  
-.

② -----  
----- 각 호-----  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임대기준 및 기간) ① 시장  
-----  
-----  
----- 농기계를 임대하며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초과할 ----- . -----  
----- 한  
차례만 연장할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임대대상농기계와 임대료)

① -----  
-----  
----- 별표와 같이 한다.

② ----- 따라 -----  
----- 별표-----

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농기계의 운반비용, 사용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제10조(임대수입금) 시장은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· 2. (생략)

제11조(임대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반액면제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

-----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-----.

③ ----- 따라 -----.

④ ----- 그 밖에 -----.

제10조(임대수입금) ----- 각 호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임대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전액면제 : 재해·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(임대료의 반환)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.

1.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

가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② 시장은 재해·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대료의 반환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일부 반환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

가.-----

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  
능한 경우

나. (생략)

## 2. 전액 반환

가. 농기계의 출고전 사용신청  
취소원을 제출한 경우. 다  
만, 출고후 사용자의 개인  
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중  
반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  
니한다.

제13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시장  
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 
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  
약을 취소할 수 있다

1. ~ 3. (생략)
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
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
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4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

①·② (생략)

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 
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임무를  
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  
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

----- 불가  
능한 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2. 전액 반환 : 농기계를 출고  
하기 전에 사용신청 취소원을  
제출한 경우

제13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----

----- 각 호-----

-----
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거짓 -----

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따른 주의나 관리임무

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잃어버

리거나 -----

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·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.

제16조(임대계약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.

1. 임대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
2.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3. · 4. (생략)

제17조(비치대장)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.

④ -----  
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.

제16조(임대계약의 제한) -----  
----- 각 호의 -----  
-----  
--- 범위-----.

1. ----- 3회 이상 -----  
-----
2. -----  
----- 사람으로서 3회 이상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비치대장) 임대사업-----  
-----  
- 각 호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u>원회)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은 기술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업관련 기관의 전문가,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, 작목반장,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.</u></p> |
| <p><u>제18조 (생 략)</u></p> <p><u>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| <p><u>제19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</u></p> <p><u>제20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</u><br/> <u>-----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관계법령

## □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
**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4.1]

**제4조(자금 지원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,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4.1]

**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자(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)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,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.4.1]

## □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」

**제3조(자금 지원 등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, 기술훈련,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업기계의 제조업자
2.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
3.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(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

[전문개정 2009.9.3]

#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,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과 운영에 필요한 기능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 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,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.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.
-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.

나. 비용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2013년 101,680천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820,68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.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   | 2013년   | 2014년   | 2015년   | 2016년   | 2017년   | 계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농기계 임대사업 | 101,680 | 159,000 | 180,000 | 190,000 | 190,000 | 820,680 |

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## 3. 부대의견

- 향후 5년이상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정비.수리 전문인력 양성

## 4. 작성자

구미시농업기술센터

기술개발과장 이 해 권

작 물 담 당 장 상 용

담 당 자 윤 종 경

(☎ 482- 1275)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1차년도<br>(2013 년) | 2차년도<br>(2014년) | 3차년도<br>(2015년) | 4차년도<br>(2016 년) | 5차년도<br>(2017년) | 계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50,000           | 60,000          | 70,000          | 80,000           | 100,000         | 360,000 |
| 농기계 임대료                 |       | 50,000           | 60,000          | 70,000          | 80,000           | 100,000         | 360,000 |
| 농기계 손상 변상금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세 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101,680          | 159,000         | 180,000         | 190,000          | 190,000         | 820,680 |
|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51,680           | 109,000         | 120,000         | 120,000          | 120,000         | 520,680 |
| 일반운영비및재료비               |       | 50,000 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60,000          | 70,000           | 70,000          | 300,000 |
| 자산취득비및시설비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의존<br>재원                | 계     | 101,680          | 159,000         | 180,000         | 190,000          | 190,000         | 820,68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비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비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비    | 101,680          | 159,000         | 180,000         | 190,000          | 190,000         | 820,680 |
| 자체<br>수입                | 계     | 50,000           | 60,000          | 70,000          | 80,000           | 100,000         | 360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수입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| 50,000           | 60,000          | 70,000          | 80,000           | 100,000         | 360,000 |
| 지방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기 금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그 밖의 사항<br>(채무부담, 민자 등)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※ 인건비 기준 :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기준에 따라 작성함.